

**<해커스 전산세무 1급 법인세 이론+실기+기출문제(2018년 최신판)> 2019 세법 개정 사항**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사항을 토대로, 해커스 전산세무 1급 법인세 교재에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2018년 최신판 <해커스 전산세무 1급 법인세 이론+실기+기출문제>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19년 전산세무 1급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업데이트)

**1. 문화접대비의 범위 확대**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30 조 제 5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접대비(*)의 범위 : 국내에서의 문화 관련 지출로서 다음의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li> <li>(*)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인정</li> <li>○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의 입장권 구입</li> <li>○ 영상간행물 등의 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확대</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 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li> </ul>	<개정이유>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84	② 주석	4) 국내에서의 문화 관련 지출로서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의 입장권 구입, 영상간행물 등의 구입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	4) 국내에서의 문화 관련 지출로서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의 입장권 구입, 영상간행물 등의 구입,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 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

2.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인정 대상 확대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7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 인정 대상</li> <li>○ 대상 :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li> <li>○ 금액 요건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b>5 백만원</b> 이하인 것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확대</li> <li>○ 대상 : (좌동)</li> <li>○ 금액 요건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b>1 천만원</b> 이하인 것에 한함</li> </ul>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2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b>5 백만원</b> 이하인 것에 한함<sup>1)</sup>)</li> <li><sup>1)</sup> <b>5 백만원</b> 초과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b>1,000 만원</b> 이하인 것에 한함<sup>1)</sup>)</li> <li><sup>1)</sup> <b>1,000 만원</b> 초과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li> </ul>

### 3. 대손사유 규정 보완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의 2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대손사유</li> <li>○ <b>물품수출·국외제공용역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b></li> <li>□ 임의대손사유</li> <li>○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대손사유 (빨간색 글씨 삭제)</li> <li>□ 임의대손사유 (추가)</li> <li>○ <b>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b></li> </ul>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변경사항 반영 / 납세자 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72	(1) ①	① 강제대손사유(신고조정항목) ~ · <b>물품수출·국외제공용역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b>	① 강제대손사유(신고조정항목) ~ (빨간색 글씨 삭제)
72	(1) ②	② 임의대손사유(결산조정항목) ~ · 파산, 강제집행, ~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임의대손사유(결산조정항목) ~ · 파산, 강제집행, ~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b>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b> (파란색 글씨 추가)

#### 4.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범위 확대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li> <li>○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액</li> <li>○ 단,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 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가액 범위 확대</li> <li>○ (좌동)</li> <li>(빨간색 글씨 삭제)</li> </ul>	<개정이유>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

#####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98	(5) ①	<p>[2 순위] 감정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정평가법인</b>이 평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li> </ul>	<p>[2 순위] 감정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b>가 평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li> </ul>

## 5.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확대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제 24 조 제 2 항	□ 지정기부금의 손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 한도 확대 ○ (좌동)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인 경우 : 20%  (파란색 글씨 추가)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6.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제 24 조 제 5 항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b>5년</b>	□ 이월공제 기간 연장 ○ <b>10년</b>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52	05	<p>[2 단계] 기부금 한도시부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손금 한도액</th> <th>세법상 처리</th> </tr> </thead> <tbody> <tr> <td>법정기부금</td> <td>~</td> <td>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sup>2)</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sup>3)</sup> </td> </tr> <tr> <td>우리사주조합기부금</td> <td>~</td> <td>~</td> </tr> <tr> <td>지정기부금</td> <td>                     (기준소득금액<sup>1)</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td> <td>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sup>2)</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sup>3)</sup> </td> </tr> </tbody> </table> <p>1) 기준소득금액 = ~                      2)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b>5년</b>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 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이 있는 경우 : Min[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을 손금산입(기타)</p>	구분	손금 한도액	세법상 처리	법정기부금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2)</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3)</sup>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sup>1)</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2)</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3)</sup>	<p>[2 단계] 기부금 한도시부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손금 한도액</th> <th>세법상 처리</th> </tr> </thead> <tbody> <tr> <td>법정기부금</td> <td>~</td> <td>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sup>3)</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sup>4)</sup> </td> </tr> <tr> <td>우리사주조합기부금</td> <td>~</td> <td>~</td> </tr> <tr> <td>지정기부금</td> <td>                     (기준소득금액<sup>1)</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sup>2)</sup> </td> <td>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sup>3)</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sup>4)</sup> </td> </tr> </tbody> </table> <p>1) 기준소득금액 = ~                      2) 「<b>사회적기업육성법</b>」에 따른 사회적기업(예.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인 경우 : <b>20%</b>                      3)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b>10년</b>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단,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이 있는 경우 : Min[당기 한도미달액,</p>	구분	손금 한도액	세법상 처리	법정기부금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3)</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4)</sup>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sup>1)</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sup>2)</sup>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3)</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4)</sup>
구분	손금 한도액	세법상 처리																									
법정기부금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2)</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3)</sup>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sup>1)</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2)</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3)</sup>																									
구분	손금 한도액	세법상 처리																									
법정기부금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3)</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4)</sup>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sup>1)</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sup>2)</sup>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sup>3)</sup>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sup>4)</sup>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을 손금산입(기타)
152	05	[3 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㉞)	[3 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㉞)
154	주석 1)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263	주석 2)	· 법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지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법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지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265	주석 1)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364	주석 2)	· 법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지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법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지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365	주석 1)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511	주석 2)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596	주석 2)	· 법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지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법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 지정기부금 : ~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672	주석 2)	Min [당기 한도미달액, <b>5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Min [당기 한도미달액, <b>10년</b> 내 한도초과 이월액]

7.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제 13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결손금 공제한도</li> <li>○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100%</b></li> <li>○ 그 외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7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축소</li> <li>○ (좌동)</li> <li>○ 그 외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60%</b></li> </ul>	<개정이유> 기업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58	(2) 표	<p>~ 이월결손금은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70%</b> 또는 <b>100%</b>를 한도로 공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한도) 그 외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70%</b></li> <li>· (공제 방법) Min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100%</b>(또는 <b>70%</b>), 이월결손금]을 반드시 공제(강제공제)</li> </ul>	<p>~ 이월결손금은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60%</b> 또는 <b>100%</b>를 한도로 공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한도) 그 외 일반기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60%</b></li> <li>· (공제 방법) Min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b>100%</b>(또는 <b>60%</b>), 이월결손금]을 반드시 공제(강제공제)</li> </ul>
685	주석 2)	<p>2)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 Min [㉠, ㉡] = <b>574,700,000 원</b></p> <p>㉠ 이월결손금(10년 이내 발생분) = 325,000,000 + 225,000,000 + 30,000,000 = 580,000,000 원</p> <p>㉡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b>70%</b> = 821,000,000 원 × <b>70%</b> = <b>574,700,000 원</b></p>	<p>2) 당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 Min [㉠, ㉡] = <b>492,600,000 원</b></p> <p>㉠ 이월결손금(10년 이내 발생분) = 325,000,000 + 225,000,000 + 30,000,000 = 580,000,000 원</p> <p>㉡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b>60%</b> = 821,000,000 원 × <b>60%</b> = <b>492,600,000 원</b></p>
686	주석 6)	<p>6)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이 <b>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b>인 경우 분납가능금액</p> <p>= (차감납부할세액 - 가산세) - <b>10,000,000</b></p> <p>= (<b>14,780,000</b> - 20,000) - <b>10,000,000</b> = <b>4,760,000 원</b></p>	<p>6)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이 <b>2천만원 초과</b>인 경우 분납가능금액</p> <p>= (차감납부할세액 - 가산세) × <b>50%</b></p> <p>= (<b>31,200,000</b> - 20,000) × <b>50%</b> = <b>15,590,000 원</b></p>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685	(1) ②	(-) 이월결손금 : <b>574,700,000</b> (=) 과세표준 : <b>246,300,000</b> (=) 산출세액 : <b>29,260,000</b> (=) 차감세액 : <b>25,260,000</b> (=) 총부담세액 : <b>25,280,000</b> (=) 차감납부할세액 : <b>14,780,000</b> (-) 분납할세액 : <b>4,760,000</b> (=) 차감납부세액 : <b>10,020,000</b>	(-) 이월결손금 : <b>492,600,000</b> (=) 과세표준 : <b>328,400,000</b> (=) 산출세액 : <b>45,680,000</b> (=) 차감세액 : <b>41,680,000</b> (=) 총부담세액 : <b>41,700,000</b> (=) 차감납부할세액 : <b>31,200,000</b> (-) 분납할세액 : <b>15,590,000</b> (=) 차감납부세액 : <b>15,610,000</b>
686	(2)	(화면캡처에서) 109.이월결손금 : <b>574,700,000</b> 113.과세표준 : <b>246,300,000</b> 120.산출세액 : <b>29,260,000</b> 122.차감세액 : <b>25,260,000</b> 125.가감계 : <b>25,280,000</b> 134.차가감납부할세액 : <b>14,780,000</b> 156. 계 : <b>4,760,000</b> 160. 계 : <b>10,020,000</b>	(화면캡처에서) 109.이월결손금 : <b>492,600,000</b> 113.과세표준 : <b>328,400,000</b> 120.산출세액 : <b>45,680,000</b> 122.차감세액 : <b>41,680,000</b> 125.가감계 : <b>41,700,000</b> 134.차가감납부할세액 : <b>31,200,000</b> 156. 계 : <b>15,590,000</b> 160. 계 : <b>15,610,000</b>

8.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면제 규정 신설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인세법 제 63 조 제 1 항	□ -	□ 신설 ○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 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74	(1)	④ 납부 ·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 사업연도가 x1. 1. 1. ~ x1. 12. 31.인 경우 : x1 년 8 월 31 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④ 납부 · 중간예납세액은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 사업연도가 x1. 1. 1. ~ x1. 12. 31.인 경우 : x1 년 8 월 31 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방법 1)'으로 계산한 금액이 30 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9.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규정 보완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세범처벌법 제 15 조, 법인세법 제 75 의 6 조 제 2 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sup>1)</sup> 의 발급 불성실 가산세 <b>(조세범처벌법)</b> 1) 건당 10 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 (예.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학원) ○ 미발급 금액 × <b>50%</b>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sup>1)</sup> 의 발급 불성실 가산세 <b>(법인세법)</b> 1) 건당 10 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 (예.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학원) ○ 미발급 금액 × <b>20%</b> <sup>2)</sup> 2)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 <b>10%</b>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81	⑧	<p>⑧ 그 밖의 가산세</p> <table border="1" data-bbox="302 244 1167 619"> <tr> <td data-bbox="302 244 436 384">현금영수증 불성실</td> <td data-bbox="436 244 790 384">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td> <td data-bbox="790 244 1167 384">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td> </tr> <tr> <td data-bbox="302 384 436 619"></td> <td data-bbox="436 384 790 619">                     ㉔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㉕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td> <td data-bbox="790 384 1167 619">                     Max [㉖, ㉗]                      ㉖ 건별 거부금액·불명분 금액 × 5%                      ㉗ 건별 5천원                 </td> </tr> </table>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㉔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㉕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 [㉖, ㉗] ㉖ 건별 거부금액·불명분 금액 × 5% ㉗ 건별 5천원	<p>⑧ 그 밖의 가산세</p> <table border="1" data-bbox="1198 244 2128 770"> <tr> <td data-bbox="1198 244 1332 371">현금영수증 불성실</td> <td data-bbox="1332 244 1731 37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sup>1)</sup>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td> <td data-bbox="1731 244 2128 371">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td> </tr> <tr> <td data-bbox="1198 371 1332 496">현금영수증 불성실</td> <td data-bbox="1332 371 1731 49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up>2)</sup> 법인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td> <td data-bbox="1731 371 2128 496">                     미발급 금액 × 20%<sup>3)</sup> </td> </tr> <tr> <td data-bbox="1198 496 1332 770">현금영수증 불성실</td> <td data-bbox="1332 496 1731 77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법인인,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㉕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td> <td data-bbox="1731 496 2128 770">                     Max [㉖, ㉗]                      ㉖ 건별 거부금액·불명분 금액 × 5%                      ㉗ 건별 5천원                 </td> </tr> </table> <p><sup>1)</sup> 법 소정 소비자상대업종 (예.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학원)</p> <p><sup>2)</sup>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 (예. 음식점업, 숙박업, 병원, 학원)</p> <p><sup>3)</sup>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 10%</p>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 <sup>1)</sup> 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sup>2)</sup> 법인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 × 20% <sup>3)</sup>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법인인,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㉕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 [㉖, ㉗] ㉖ 건별 거부금액·불명분 금액 × 5% ㉗ 건별 5천원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㉔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㉕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 [㉖, ㉗] ㉖ 건별 거부금액·불명분 금액 × 5% ㉗ 건별 5천원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 <sup>1)</sup> 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1%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sup>2)</sup> 법인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 × 20% <sup>3)</sup>																
현금영수증 불성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법인인,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㉕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Max [㉖, ㉗] ㉖ 건별 거부금액·불명분 금액 × 5% ㉗ 건별 5천원																

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164 조 제 1 항	<p>□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p> <p>○ <b>1~3 분기</b>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b>말일</b></p> <p>○ <b>4 분기</b> : 다음 과세기간 <b>2 월 말일</b></p>	<p>□ 제출기한 변경</p> <p>○ <b>1~4 분기</b>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b>10 일</b></p>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79	참고	<p>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b>말일(4 분기에 지급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2 월 말일)</b>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p> <p>(표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월 : 4 월 <b>말</b></li> <li>· 4~6 월 : 7 월 <b>말</b></li> <li>· 7~9 월 : 10 월 <b>말</b></li> <li>· 10~12 월 : 다음 연도 <b>2 월 말</b></li> </ul>	<p>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b>10 일</b>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p> <p>(표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월 : 4 월 <b>10 일</b></li> <li>· 4~6 월 : 7 월 <b>10 일</b></li> <li>· 7~9 월 : 10 월 <b>10 일</b></li> <li>· 10~12 월 : 다음 연도 <b>1 월 10 일</b></li> </ul>
280	기출 확인 문제	·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제 11 기 10 월 <b>25 일</b> 제출하였다.	·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 법정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제 11 기 10 월 <b>5 일</b> 제출하였다.
281	⑤	<sup>1)</sup> 2 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7 월 <b>말일</b>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	<sup>1)</sup> 2 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7 월 <b>10 일</b>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
513	(5) ①	<sup>1)</sup> 3 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0 월 <b>말일</b>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	<sup>1)</sup> 3 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0 월 <b>10 일</b>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
676	(1) ④	<sup>1)</sup> 3 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0 월 <b>말일</b>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	<sup>1)</sup> 3 분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0 월 <b>10 일</b>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에는 ~

1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신설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164 의 3 조, 법인세법 제 75 의 7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li> <li>○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li> <li>○ 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b>10 일</b></li> </ul> </li> <li>□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li> <li>○ 가산세액 : 지급금액 × <b>0.5%</b> <sup>1)</sup></li> </ul> </li> </ul> <p><sup>1)</sup> - 제출기한이 지난 후 <b>3 개월</b>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b>0.25%</b>                      - <b>2019</b> 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금액의 <b>50%</b>로 함 (<b>0.25%</b>, 기한 후 <b>3 개월</b> 이내 제출 <b>0.125%</b>)</p>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참고) 근로장려금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2018** 년까지는 연 **1** 회 지급
- **2019** 년부터는 연 **2** 회(반기별) 지급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79	④ 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산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천징수납부 불성실</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td> <td>~</td> <td>미제출분 지급금액 × 1% <sup>2)</sup></td> </tr> <tr> <td>~</td> <td>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td> </tr> </tbody> </table> <p>1) ~</p> <p>2)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한다.</p>	구분	내용	가산세액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sup>2)</sup>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산세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천징수납부 불성실</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td> <td>~</td> <td>미제출분 지급금액 × 1% <sup>2)</sup></td> </tr> <tr> <td>~</td> <td>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td> </tr> <tr> <td rowspan="2">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td> <td>법정기한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td> <td>미제출분 지급금액 × <b>0.5%</b> <sup>3) 4)</sup></td> </tr> <tr> <td>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td> <td>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b>0.5%</b> <sup>4)</sup></td> </tr> </tbody> </table> <p>1) ~</p> <p>2)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한다.</p> <p>3)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b>0.25%</b>로 한다.</p> <p>4) <b>2019</b>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상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b>50%</b>로 한다. (<b>0.25%</b>,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b>0.125%</b>)</p>	구분	내용	가산세액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sup>2)</sup>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법정기한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 지급금액 × <b>0.5%</b> <sup>3) 4)</sup>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b>0.5%</b> <sup>4)</sup>
구분	내용	가산세액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sup>2)</sup>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																												
구분	내용	가산세액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sup>2)</sup>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법정기한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 지급금액 × <b>0.5%</b> <sup>3) 4)</sup>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 지급금액 × <b>0.5%</b> <sup>4)</sup>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79	참고	-	<p>(‘(참고)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밑에 아래의 참고 내용을 추가)</p> <p><b>(참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b></p> <p>·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p> <p>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별로 반기 동안의 소득지급액을 기록한 신고서식(=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작성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b>10</b>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연 단위로 제출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반기마다 제출되는 것이며, 이는 반기별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sup>1)</sup>의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p> <p><sup>1)</sup>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p> <table border="1" data-bbox="1048 727 1908 911"> <thead> <tr> <th data-bbox="1048 727 1451 783">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지급월</th> <th data-bbox="1451 727 1908 78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48 783 1451 847">1 ~ 6 월</td> <td data-bbox="1451 783 1908 847">7 월 10 일</td> </tr> <tr> <td data-bbox="1048 847 1451 911">7 ~ 12 월</td> <td data-bbox="1451 847 1908 911">다음 연도 1 월 10 일</td> </tr> </tbody> </table>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지급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 6 월	7 월 10 일	7 ~ 12 월	다음 연도 1 월 10 일
특정사업소득, 상용근로소득 지급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 6 월	7 월 10 일								
7 ~ 12 월	다음 연도 1 월 10 일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82	(3) ③	<p>③ 지연 제출 및 지연 등록 시 가산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li> <li>· 감면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2 422 1097 539"> <thead> <tr> <th>제출 시기</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 개월 이내 <sup>1)</sup></td> <td>50%</td> </tr> </tbody> </table> <p><sup>1)</sup>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 0.5%)</p>	제출 시기	감면율	1 개월 이내 <sup>1)</sup>	50%	<p>③ 지연 제출 및 지연 등록 시 가산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b>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0.5%)</b>,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0.5%)</li> <li>· 감면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1126 422 1921 539"> <thead> <tr> <th>제출 시기</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1 개월 이내 <sup>1)</sup></td> <td>50%</td> </tr> </tbody> </table> <p><sup>1)</sup>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b>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0.5%)</b>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 0.5%, <b>0.25%</b>)</p>	제출 시기	감면율	1 개월 이내 <sup>1)</sup>	50%
제출 시기	감면율										
1 개월 이내 <sup>1)</sup>	50%										
제출 시기	감면율										
1 개월 이내 <sup>1)</sup>	50%										
182	(4)	<table border="1" data-bbox="302 715 1097 805"> <tr> <td>·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td> </tr> </table>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table border="1" data-bbox="1126 694 1921 826"> <tr> <td>·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b>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b> ~</td> </tr> </table>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b>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b>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b>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b> ~											

## 12.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7 의 4 조	<p>□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Min [㉠, ㉡]</p> <p>㉠ (미달납부세액×3%) + {미달납부세액× <b>0.03%</b><sup>1)</sup>} × 미납일수}</p> <p>1) <b>1 만분의 3</b></p> <p>㉡ 한도 : 미달납부세액 × 10%</p>	<p>□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Min [㉠, ㉡]</p> <p>㉠ (미달납부세액×3%) + {미달납부세액× <b>0.025%</b><sup>1)</sup>} × 미납일수}</p> <p>1) <b>10 만분의 25</b></p> <p>㉡ 한도 : 미달납부세액 × 10%</p>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79	④ 표	<p>Min [㉠, ㉡]</p> <p>㉠ (미달납부세액×3%) + {미달납부세액× (<b>3/10,000</b>)×미납일수<sup>1)</sup>}</p> <p>㉡ 한도 : 미달납부세액 × 10%</p>	<p>Min [㉠, ㉡]</p> <p>㉠ (미달납부세액×3%) + {미달납부세액× (<b>25/100,000</b>)×미납일수<sup>1)</sup>}</p> <p>㉡ 한도 : 미달납부세액 × 10%</p>

### 13.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7 의 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불성실 가산세율</li> <li>○ 미납기간 1 일당 <b>0.03%</b> <sup>1)</sup></li> <li><sup>1)</sup> <b>1 만분의 3</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율 인하</li> <li>○ 미납기간 1 일당 <b>0.025%</b> <sup>1)</sup></li> <li><sup>1)</sup> <b>10 만분의 25</b></li> </ul>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78	⑥ 표	미달납부세액 × <b>(3/10,000)</b> × 미납일수 <sup>1)</sup>	미달납부세액 × <b>(25/100,000)</b> × 미납일수 <sup>1)</sup>
281	(1)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sup>1)</sup> = 미달납부세액 × <b>3/10,000</b> × 미납일수 = 17,300,000 원 × <b>3/10,000</b> × 3 일 = <b>15,570 원</b> <sup>1)</sup> 법정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달납부세액 × <b>3/10,000</b> × 미납일수'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적용한다.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sup>1)</sup> = 미달납부세액 × <b>25/100,000</b> × 미납일수 = 17,300,000 원 × <b>25/100,000</b> × 3 일 = <b>12,975 원</b> <sup>1)</sup> 법정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달납부세액 × <b>25/100,000</b> × 미납일수'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적용한다.
281	(1)	⑥ 가산세액 합계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2,135,000 + <b>15,570</b> + 225,000 + 84,800 + 50,000 = <b>2,510,370 원</b>	⑥ 가산세액 합계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2,135,000 + <b>12,975</b> + 225,000 + 84,800 + 50,000 = <b>2,507,775 원</b>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282	(2)	② "납부(환급) 불성실 - 납부"라인에 있는 "(일수)"란에 커서를 놓고 미납일수창에서 미납일수를 "3"으로 입력하고, "미납세액"란에 "17,300,000"을 입력한 후, 가산세액이 "15,570"임을 확인한다.	② "납부(환급) 불성실 - 납부"라인에 있는 "(일수)"란에 커서를 놓고 미납일수창에서 미납일수를 "3"으로 입력하고, "미납세액"란에 "17,300,000"을 입력한 후, 가산세액이 "12,975"임을 확인한다.
282	(2)	⑥ "합계"라인에 있는 "가산세액"이 "2,510,370"임을 확인한다.	⑥ "합계"라인에 있는 "가산세액"이 "2,507,775"임을 확인한다.
283	중간	(^[신고납부가산세] 탭' 화면캡처에서) · 납부(환급)불성실 ▶ 가산세율 : 3/10,000 · 납부(환급)불성실 ▶ 가산세액 : 15,570	(^[신고납부가산세] 탭' 화면캡처에서) · 납부(환급)불성실 ▶ 가산세율 : 25/100,000 · 납부(환급)불성실 ▶ 가산세액 : 12,975
283	하단	(^[미제출가산세] 탭' 화면캡처에서) · 합계 ▶ 가산세액 : 2,510,370	(^[미제출가산세] 탭' 화면캡처에서) · 합계 ▶ 가산세액 : 2,507,775
502	2- (1)번 해설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38,650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7,938,650 · 납부불성실[71] : 500,000 / 13,650 · 합계[77] : 38,650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36,375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7,936,375 · 납부불성실[71] : 500,000 / 11,375 · 합계[77] : 36,375
502	2- (1)번 해설	· 납부불성실 : (1,000,000 - 500,000) × 91 일 × (3/10,000) = 13,650 원	· 납부불성실 : (1,000,000 - 500,000) × 91 일 × (25/100,000) = 11,375 원
528	2- (1)번 해설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38,800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22,908,800 · 납부불성실[71] : 500,000 / 13,800 · 합계[77] : 38,800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36,500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22,906,500 · 납부불성실[71] : 500,000 / 11,500 · 합계[77] : 36,500
528	2- (1)번 해설	· 납부불성실 : (1,000,000 - 500,000) × 92 일 × (3/10,000) = 13,800 원	· 납부불성실 : (1,000,000 - 500,000) × 92 일 × (25/100,000) = 11,500 원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570	2- (1)번 해설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b>115,590</b>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b>175,590</b> · 납부불성실[71] : 60,000 / <b>90</b> · 합계[77] : <b>115,590</b>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b>115,575</b>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b>175,575</b> · 납부불성실[71] : 60,000 / <b>75</b> · 합계[77] : <b>115,575</b>
570	2- (1)번 해설	· 납부불성실 : (720,000 원 - 640,000 원 - 20,000 원) × 5 일 × <b>(3/10,000)</b> <b>= 90 원</b>	· 납부불성실 : (720,000 원 - 640,000 원 - 20,000 원) × 5 일 × <b>(25/100,000)</b> <b>= 75 원</b>
588	2- (1)번 해설	(‘가산세명세’ 화면캡처에서) · 납부불성실[71] : 500,000 / <b>13,800</b> · 합계[77] : <b>88,800</b>	(‘가산세명세’ 화면캡처에서) · 납부불성실[71] : 500,000 / <b>11,500</b> · 합계[77] : <b>86,500</b>
588	2- (1)번 해설	· 납부불성실 : (500,000 원 + 350,000 원 - 350,000 원) × 92 일 × <b>(3/10,000) = 13,800 원</b>	· 납부불성실 : (500,000 원 + 350,000 원 - 350,000 원) × 92 일 × <b>(25/100,000) = 11,500 원</b>
601	2- (1)번 해설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b>37,777</b>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b>407,777</b> · 납부불성실[71] : 370,000 / <b>777</b> · 합계[77] : <b>37,777</b>	(화면캡처에서) · 가산세액계[25] : <b>37,647</b>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b>407,647</b> · 납부불성실[71] : 370,000 / <b>647</b> · 합계[77] : <b>37,647</b>
601	2- (1)번 해설	· 납부불성실 : (910,000 원 - 540,000 원) × 7 일 × <b>(3/10,000) = 777 원</b>	· 납부불성실 : (910,000 원 - 540,000 원) × 7 일 × <b>(25/100,000)</b> <b>= 647 원 (원단위 미만 절사)</b>

14.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 전자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 가산세율 인하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60 조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b>0.5%</b></li> <li>○ 발급명세를 법정 전송기한 이후이면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b>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b> 전송한 경우</li> <li>□ 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b>1%</b></li> <li>○ 발급명세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b>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b>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b>0.3%</b></li> <li>○ 발급명세를 법정 전송기한 이후이면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b>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b> 전송한 경우</li> <li>□ 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b>0.5%</b></li> <li>○ 발급명세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b>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b>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li> </ul>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법인세법 제 75 의 8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b>0.5%</b></li> <li>○ 발급명세를 법정 전송기한 이후이면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li> <li>□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b>1%</b></li> <li>○ 발급명세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 : <b>0.3%</b></li> <li>○ 발급명세를 법정 전송기한 이후이면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li> <li>□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b>0.5%</b></li> <li>○ 발급명세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li> </ul>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81	⑦ 표	<p>⑦ 계산서 관련 가산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산세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지연전송</td> <td>~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td> <td>공급가액× <b>0.5%</b></td> </tr> <tr> <td>미전송</td> <td>~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td> <td>공급가액× <b>1%</b></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가산세 금액	지연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b>0.5%</b>	미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b>1%</b>	<p>⑦ 계산서 관련 가산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산세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지연전송</td> <td>~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td> <td>공급가액× <b>0.3%</b></td> </tr> <tr> <td>미전송</td> <td>~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td> <td>공급가액× <b>0.5%</b></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가산세 금액	지연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b>0.3%</b>	미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b>0.5%</b>
구분	내용	가산세 금액																			
지연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b>0.5%</b>																			
미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b>1%</b>																			
구분	내용	가산세 금액																			
지연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b>0.3%</b>																			
미전송	~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b>0.5%</b>																			

15. 재화의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보완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4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인 등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li> <li>○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b>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b></li> </ul> </li> </ul>	<p>&lt;개정이유&gt;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재화의 범위 합리화</p>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16.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명확화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다음의 것은 과세함</li> <li>○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케이블카,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여객운송</li> </ul>	<개정이유> 조세법률주의 구현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17.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또는 사전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5 조 제 7 호, 제 8 호	<p>□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p>	<p>□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았더라도, ㉠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but 지연수취 가산세 0.5% 납부)</p> <p>○ 해당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p> <p>○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관이 결정·경정</p> <p>□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았더라도, ㉠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관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but 지연수취 가산세 0.5% 납부)</p>	<p>&lt;개정이유&gt; 공급받는 자의 세 부담 완화</p>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437	문제 11	-	<p>(문제에 있는 수직선 그림을 아래와 같이 수정)</p> <p>1/1      공급시기(4/20)      5/10      7/25      다음연도 1/25</p> 
491	문제 12	<p>② 올해 6월 30일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b>올해 8월 1일이 작성연월일로 기재된</b>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p>	<p>② 올해 6월 30일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b>다음연도 2월 1일에</b>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p>

18.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42 조 제 1 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4 조 제 2 항	<p>□ 의제매입세액 공제율</p> <table border="1" data-bbox="331 335 936 624">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음식점업</td> <td>법인</td> <td>6/106</td> <td rowspan="2">과세유흥장소는 4/104</td> </tr> <tr> <td>개인</td> <td>8/108<sup>1)</sup></td> </tr> <tr> <td>제조업</td> <td>중소기업, 개인</td> <td colspan="2">4/104</td> </tr> <tr> <td colspan="2">그 외</td> <td colspan="2">2/102</td> </tr> </tbody> </table> <p><sup>1)</sup>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9/109'</p> <p>□ 의제매입세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을<sup>1)</sup> × 공제율</p> <p><sup>1)</sup> ○ 법인 : <b>35%</b>                      ○ 개인 : <b>40%~50%</b></p>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	8/108 <sup>1)</sup>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	4/104		그 외		2/102		<p>□ 의제매입세액 공제율</p> <table border="1" data-bbox="965 335 1570 624">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 colspan="2">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음식점업</td> <td>법인</td> <td>6/106</td> <td rowspan="2">과세유흥장소는 4/104</td> </tr> <tr> <td>개인</td> <td>8/108<sup>1)</sup></td> </tr> <tr> <td>제조업</td> <td>중소기업, 개인</td> <td colspan="2">4/104<sup>2)</sup></td> </tr> <tr> <td colspan="2">그 외</td> <td colspan="2">2/102</td> </tr> </tbody> </table> <p><sup>1)</sup>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9/109'</p> <p><sup>2)</sup> <b>제조업 개인사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인 경우 '6/106'</b></p> <p>□ 의제매입세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율<sup>1)</sup> × 공제율</p> <p><sup>1)</sup> <b>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인상</b></p> <p>○ 법인 : <b>40%</b>                      ○ 개인 : <b>45%~65%</b></p>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	8/108 <sup>1)</sup>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	4/104 <sup>2)</sup>		그 외		2/102		<p>&lt;개정이유&gt;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업종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p>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	8/108 <sup>1)</sup>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	4/104																																					
그 외		2/102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는 4/104																																				
	개인	8/108 <sup>1)</sup>																																					
제조업	중소기업, 개인	4/104 <sup>2)</sup>																																					
그 외		2/102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456	2-(2)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품매출은 <b>500,000,000 원</b>이다.</li> </ul> <p>2기 예정신고시, 제품매출은 200,000,000이며 의제매입액은 104,000,000 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4,000,000 원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과 관련된 제품매출은 412,500,000 원이다.</li> </ul> <p>2기 예정신고시, 제품매출은 200,000,000이며 의제매입액은 104,000,000 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4,000,000 원이 있다.</p>
557	2-(2)번 해설	<p>(2 단계 화면캡처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표준 ▶ 합계 : <b>700,000,000</b></li> <li>· 과세표준 ▶ 예정분 : 200,000,000</li> <li>· 과세표준 ▶ 확정분 : <b>500,000,000</b></li> <li>· 대상액 한도계산 ▶ 한도율 : <b>35/100</b></li> </ul>	<p>(2 단계 화면캡처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표준 ▶ 합계 : <b>612,500,000</b></li> <li>· 과세표준 ▶ 예정분 : 200,000,000</li> <li>· 과세표준 ▶ 확정분 : <b>412,500,000</b></li> <li>· 대상액 한도계산 ▶ 한도율 : <b>40/100</b></li> </ul>
557	2-(2)번 해설	<p>㉠ 전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율 × 공제율 = (200,000,000 + <b>500,000,000</b>) × <b>35%</b> × 4/104 = 9,423,076 원(원 단위 미만 절사)</p>	<p>㉠ 전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일정율 × 공제율 = (200,000,000 + <b>412,500,000</b>) × <b>40%</b> × 4/104 = 9,423,076 원(원 단위 미만 절사)</p>

## 19.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인상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46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li> <li>○ 공제액 =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 1.3%<sup>1)</sup></li> <li><sup>1)</sup> 단,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및 숙박업은 2.6%</li> <li>○ 공제한도액 = 연간 <b>500 만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인상</li> <li>○ (좌동)</li> <li>○ 공제한도액 = 연간 <b>1,000 만원</b></li> </ul>	<개정이유>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20.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66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li> <li>○ 예정고지세액 <b>20 만원</b>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액 상향 조정</li> <li>○ 예정고지세액 <b>30 만원</b> 미만</li> </ul>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21.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조정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69 조 제 1 항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b>2,400 만원</b>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됨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b>3,000 만원</b>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됨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22. 정기에금 이자율 조정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 조	□ 정기에금 이자율 ○ 연 <b>1.8%</b>	□ 정기에금 이자율 ○ 연 <b>2.1%</b>	<개정이유> 시중 이자율 감안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542	2-(1)번 해설	-	(1 단계에 있는 두 번째 매입매출전표입력을 아래와 같이 수정) · 6월 30일 유형:14.건별 / 공급가액: <b>86,301</b> <sup>1)</sup> / 부가세: <b>8,630</b> / 거래처:(주)상성상사(또는 공란) / 분개:혼합 (차) 세금과공과(판관비) <b>8,630</b> (대) 부가세예수금 <b>8,630</b> <sup>1)</sup> 50,000,000 원 × <b>2.1%</b> × (30 일/365 일) = <b>86,301 원</b>

(2 단계에 있는 화면캡처를 아래와 같이 수정)

조회기간: 2019년 04월 ~ 2019년 06월 1기 확정 일수 확인

코드	거래처명(임차인)	동	층	호
1	1016 (주)삼성상사	1	1	101
2				

**등록 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105-87-54326      2.주민등록번호 -----

3.면적(m<sup>2</sup>) 100.00 m<sup>2</sup>      4.용도 사무실

5.임대기간에 따른 계약 내용

	계약갱신일	임대기간
1		2019-06-01 ~ 2021-05-31
2		

6.계약내용	금액	당해과세기간계	
보증금	50,000,000	50,000,000	
월세	1,500,000	1,500,000	
관리비			
7.간주임대료	86,301	86,301	30 일
8.과세표준	1,586,301	1,586,301	

소 계			
월세	1,500,000	관리비	
간주임대료	86,301	과세표준	1,586,301

전 체 합 계			
월세등	1,500,000	간주임대료	86,301
		과세표준(계)	1,586,301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543	2- (1)번 해설	(4 단계에 있는 화면캡처에서) • 과세표준>과세▶기타[4] : <b>73,972 / 7,397</b> • 과세표준▶합계[9] : <b>1,573,972 / 157,397</b> • 납부(환급)세액[④] : <b>147,397</b>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b>147,397</b>	(4 단계에 있는 화면캡처에서) • 과세표준▶과세>기타[4] : <b>86,301 / 8,630</b> • 과세표준▶합계[9] : <b>1,586,301 / 158,630</b> • 납부(환급)세액[④] : <b>148,630</b>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세액[26] : <b>148,630</b>

23.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신규사업장 개설 시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절차 보완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8 조 제 5 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92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의 등록·포기 신청절차</li> <li>○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li> <li>○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 <sup>1)</sup>에 신청하여 즉시 적용 가능</li> <li><sup>1)</sup>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절차 보완</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는 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청하여 즉시 적용 가능</li> </ul>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24.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의 범위에 영세를 매입 재화 추가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제 10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의 범위</li> <li>○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추가</li> <li>○ (좌동)</li> <li>○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li> </ul>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규정 보완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li> <li>○ 법인사업자</li> <li>○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보완</li> <li>○ (좌동)</li> <li>○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li> </ul>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2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기한 연장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1 의 2 조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대상과 신청기한</li> <li>○ 대상 거래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 만원 이상인 거래</li> <li>○ 신청기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b>3 개월</b>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한 연장</li> <li>○ (좌동)</li> <li>○ 신청기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공급받은 자)는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b>6 개월</b>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li> </ul>	<p>&lt;개정이유&gt;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상 편의 제고</p>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27.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소득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14 조 제 3 항, 제 64 의 2 조, 제 70 조 제 2 항</p>	<p>□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연 2 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p> <p>○ 비과세 사업소득</p> <p>○ 소규모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됨</p>	<p>□ 소규모 주택임대소득<sup>1)</sup>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p> <p>1) 세법 원문에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p> <p>○ 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p> <p>○ 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p> <p>○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 : ① 또는 ② 중 선택</p> <p>① <math>\{(\text{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 \text{법 소정 금액}^2) \times 14\% \} + \text{그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기본세율)}</math></p> <p>②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였을 때의 종합소득 결정세액(기본세율)</p> <p>2)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p>	<p>&lt;개정이유&gt;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도모</p>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28. 법 소정 규모 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 41 조 제 7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또는 장소의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적·반복적 : 사업소득으로 분류</li> </ul> </li>   <li>○ 일시적 : 기타소득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소정 규모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분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sup>1)</sup>하고 연간 총수입금액 500 만원 이하인 경우 : (계속적·반복적이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 허용</li> </ul> </li> <li><sup>1)</sup> (예) 카풀 서비스, 주차장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li> </ul>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 도모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29.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조정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경비율 : <b>70%</b></li> <li>○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li> <li>○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지역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li> <li>○ 문예창작소득</li> <li>○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경비율 : <b>60%</b>로 조정</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li> <li>○ <b>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연 500 만원 이하인 것</b></li> </ul>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496	4-(2)번	(2) ~ 특별 강연을 개최하고 강연료로 <b>160,000 원</b> 을 ~	(2) ~ 특별 강연을 개최하고 강연료로 <b>120,000 원</b> 을 ~
604	4-(2)번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총액 : <b>160,000</b></li> <li>· 필요경비 : <b>112,000</b></li> <li>· 소득금액 : <b>48,00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총액 : <b>120,000</b></li> <li>· 필요경비 : <b>72,000</b></li> <li>· 소득금액 : <b>48,000</b></li> </ul>
629	기출 확인 문제	~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강연료로 <b>160,000 원</b> 을 ~	~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강연료로 <b>120,000 원</b> 을 ~
631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경비율 : <b>70%</b></li> <li>· 지급총액 : <b>160,000</b></li> <li>· 필요경비 : <b>112,000</b></li> <li>· 소득금액 : <b>48,00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경비율 : <b>60%</b></li> <li>· 지급총액 : <b>120,000</b></li> <li>· 필요경비 : <b>72,000</b></li> <li>· 소득금액 : <b>48,000</b></li> </ul>

### 30.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금액 확대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 의 3 조, 제 18 조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li> <li>○ 재직 중에 받는 경우 : 근로소득 (단, 연 <b>300 만원</b>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li> <li>○ 퇴직 후에 받는 경우 : 기타소득 (단, 연 <b>300 만원</b>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금액 확대</li> <li>○ 재직 중에 받는 경우 : 근로소득 (단, 연 <b>500 만원</b>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li> <li>○ 퇴직 후에 받는 경우 : 기타소득 (단, 연 <b>500 만원</b>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li> </ul>	<p>&lt;개정이유&gt;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p>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31.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연 240 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것일 것</li> <li>○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500 만원 이하일 것</li> <li>○ 월정액급여액이 월 190 만원 이하일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직 근로자 또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sup>1)</sup>에 대한 것일 것<sup>1)</sup> 예. 운전, 청소, 경비</li> <li>○ (좌동)</li> <li>○ 월정액급여액이 월 210 만원 이하일 것</li> </ul> </li> </ul>	<개정이유>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 세부담 완화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516	12 번 해설	(나)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월정액급여 190 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 천 5 백만원 이하이다.	(나)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은 월정액급여 210 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2 천 5 백만원 이하이다.

### 3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인상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47 조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li> <li>○ 1 일 <b>10 만원</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공제 금액 인상</li> <li>○ 1 일 <b>15 만원</b></li> </ul>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33. 비실명 이자·배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상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129 조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실명 이자·배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li> <li>○ <b>40%</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세율 인상</li> <li>○ <b>42%</b></li> </ul>	<개정이유> 비실명 이자·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34. 자녀세액공제 대상 보완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59 의 2 조 제 1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세액공제 중 다자녀 세액공제<sup>1)</sup> 대상</li> <li>○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위탁자·위탁아동 포함)</li> </ul> <p><b>1)- 1명 : 15만원</b>  <b>- 2명 : 30만원</b>  <b>- 3명 이상 : 30만원 + 30만원×(자녀수-2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세액공제 대상 보완</li> <li>○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위탁자·위탁아동 포함)로서 <b>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인 자</b></li> </ul>	<p>&lt;개정이유&gt;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다자녀 세액공제 적용</p>

#### (참고) 아동수당

- 2019년 1월부터 : 부모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만 6세(72개월) 미만' 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2019년 9월부터 : 부모의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 초등학교 입학 전이고 ㉡ 만 7세(84개월) 미만' 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3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의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5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대상</li> <li>○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문화</li> <li>○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li> </ul>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36.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5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li> <li>○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li> <li>○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서 출산 1 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li> </ul>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37. 기부금 세액공제액 증액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59 의 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li> <li>○ <b>2 천만원</b> 이하 : 15%</li> <li>○ <b>2 천만원</b> 초과분 :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li> <li>○ <b>1 천만원</b> 이하 : 15%</li> <li>○ <b>1 천만원</b> 초과분 : 30%</li> </ul>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 ▶ 교재 수정사항

페이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569	14 번 해설	① 일반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b>2,000 만원</b>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이다.	① 일반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b>1,000 만원</b> 이하)의 세액공제율은 15%이다.
479	11	① <b>2 천</b> 5 백만원의 종교단체기부금 중 <b>2 천만원</b> 초과분	① <b>1 천</b> 5 백만원의 종교단체기부금 중 <b>1 천만원</b> 초과분
586	11 번 해설	① 기부금 중 <b>2 천만원</b>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은 30%, 일반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 의료비(안경구입비)와 교육비(대학교등록금)의 세액공제율은 15%이다.	① 기부금 중 <b>1 천만원</b>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은 30%, 일반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 의료비(안경구입비)와 교육비(대학교등록금)의 세액공제율은 15%이다.

**38. 기부금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61 의 제 2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기간</li> <li>○ <b>5년</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공제 기간 연장</li> <li>○ <b>10년</b></li> </ul>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39.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의 2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b>도서·공연 사용분</b></li> <li>○ 공제율 30% 적용</li> <li>○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b>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b></li> <li>○ (좌동)</li> <li>○ (좌동)</li> </ul>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

#### 40.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완화

##### ▶ 세법개정안

해당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소득세법 제 65 조 제 5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기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세액으로 반드시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함 (강제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복식부기의무자가</b>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기 중간예납기간 실적기준 세액으로 반드시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함 (강제규정)</li> <li>○ <b>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자는 적용 제외</b></li> </ul>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 ▶ 교재 수정사항

없음 (추적으로 개정세법 내용만 소개)